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25-30호

거주자우선주차 신설 구간 이용 신청 공고

1. 대상 주차장: 마포월드컵 공영주차장
- 거주자우선주차장: 110면 **(유료 공영주차장과 혼합하여 사용)**
  *** 만차 시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요망**

2. 신청 대상: 마포구 관내 거주자·사업자(재직자 포함)의 자동차 소유자

※ '거주자'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마포구 관내인 사람을 말함.
※ 비거주자(타구)도 신청 가능하나 순위는 최하위로 구분 됨.
※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기준일: 정기배정 이용 시작일)는 배정 제외, 배정 및 주차요금 납부 후라도 체납(미이행)이 확인되면 배정 취소함.

3. 배정 일정

이용 신청(접수)기간	배정 발표일시	주차료 납부기간	주차장 이용기간
2025. 5. 1.(목) ~ 5. 16.(금)	2025. 5. 19.(월) 16:00 이후 (홈페이지 확인)	2025. 5. 19.(월) ~ 2025. 5. 26.(월) (카드결제, 가상계좌)	2025. 5. 28.(수) ~ 2025. 9. 30.(화) (이후 6개월 단위로 재심사 배정)

*** 납부기간까지 미납 시 배정 취소**

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임시 주차선으로 공사 등으로 이용정지 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삭선 시에는 저득점자 순으로 배정 취소되고 대체 주차장 마련은 불가함.

나. 배정 확정자는 문자 또는 카카오 알림 톡으로 발송, 신청인이 로그인 후 인터넷으로 개별 확인(必)
*** 문자 안내 수신 차단(문자, 카카오톡)으로 발생 되는 문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임을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공고의 배정 발표일 확인 후 개별적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납부 기간 내에 미납 시 별도 개별 통보하지 않고 배정 취소됨.

4. 배정기준 및 조건: 붙임 '배정 기준 및 조건' 참조

5. 신청 방법: 인터넷(http://eparking.mfmc.or.kr)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거나
공단 방문{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

가. 제출서류

1) 기존 이용 고객 및 대기자(6개월 단위 점수에 의한 순환 배정)
- 별도 신청 및 제출서류는 없음(단, 변동사항 있을 시에만 제출)
- 서류 재요청시에는 반드시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신규 신청자**
- 거주자: 자동차등록증, 주민등록표 초본(주소변동 내역 포함한 상세본), 주민등록표 등본(동거인 이름 전부 표시)
- 사업자(재직자): 차량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재직자는 재직 증명서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등)
  *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https://eparking.mfmc.or.kr/Residence/InfoGuideTab1)
  *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으므로, 생년월일을 제외한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나.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직접 공단에 통보(증빙서류 첨부) 해야 하며 미 통보 및 공단에서 신청 내용에 대한 서류 요청에 미 협조 시에는 취소 및 배정 제외 사유에 해당이 됨.

6. 신청 구분 및 주차요금(관련 조례에 따라 할인 대상자에게는 할인 적용)

구분		전일(24시간)	주간(09:00~18:00)	야간(19:00~익일08:00)	비 고
주차요금 (월 요금)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	5만원	3만6천원	2만4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7. 그밖에 더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주차관리부{(☎ 02-300-5042~5045/ 운영시간 평일 09:00~18:00(점심시간12:00~13:0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 4. 23.

<붙임 1>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기준 및 조건

1. 배정 기준

가. 배정방법 : 신청 자동차(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자 기준) 및 거주 정보(주민등록 기준)를 기초로 아래 '배점표'상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배정

나. 배정대상(정기배정) : 정기 배정 신청 기간 중 신청자

※ 정기 배정 이후에는 여유분 발생 시 수시 배정

다. 배정 우선순위(우선순위별 고득점 순으로 배정)

1) 1순위 : 배정(신청)일 현재 신청 동(洞) 내 거주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 국가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중 고도장애 및 중등도장애자 중 고득점 순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 ② 관내 전입일이 빠른 자

2) 2순위 : 1순위 우선 배정 후 마포구 관내(이하 '관내') 거주자 중에서 고득점 순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 관내 전입일이 빠른 자 ② 자동차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

3) 3순위 : 2순위 배정 후 비거주자(관내 사업자·재직자) 중 고득점 순

※ 동점 시 우선순위 : ① 관내 사업개시일(재직자는 그 사업장 재직시기)이 빠른 자 ② 자동차 배기량이 작은 자동차

<표 1> 배점표

항목			점수	확인방법
거주자 (45점)	① 거주자 거주기간(관내 최종 전입일 기준) 점수	거주기간: 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3년~4년 미만 / 4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15년 미만 / 15년~20년 미만 / 20년 이상 점수: 3 / 5 / 7 / 10 / 13 / 15 / 20 / 25 / 30	30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관내 최종 전입일)
	② 거리 점수(거주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	거리: 10m 미만 / 10m~30m미만 / 30m~50m미만 / 50m 이상 점수: 15 / 10 / 7 / 3	15 이하	공단 관리 프로그램
공통 점수 (40)	차종별 (5)	① 경차(배기량 1000cc 미만)	5	자동차 등록증
		② 소형차(배기량 1000cc 이상 ~ 1600cc 미만)	2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10)	①상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마포구관내 거주자)	10	복지카드/ 국가보훈 등록증/ 장애인주차 표지(앞/뒤) 입증 자료
		②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고도장애 및 중도장애) 자동차(마포구관내 거주자)		
		③ 기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동차,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경도장애)의 자동차(마포구관내 거주자)	5	
	*단 복지카드와 장애인주차표지의 등급이 상이한 경우 장애인주차표지의 등급을 우선 함			
	친환경 자동차 (최대 5점)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1등급 자동차 (환경부 친환경 등급 조회내역 제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름	5	환경부 조회내역 제출
		저공해 등록 자동차(등록증상 '저공해' '하이브리드' 표시) 친환경 1등급 차량의 경우 저공해 등록 자동차 3점 중복점수 미인정	3	저공해 스티커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8) 막내 나이 만18세 이하	2자녀	3	주민등록표 등본/ 서울시 다둥이카드
		3자녀 이상	5	
	고령자(5)	만 65세 이상 고령자 소유 자동차 (단, 소유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일 것)	5	자동차 등록증
	공유사업 참여/ 산정기간 4개월 (이용기간 시작일 ~ 정기배정 발표 전월까지)	① 전일 배정자 기준 공유시간: 50시간 미만 / 50시간 이상 / 250간 이상 / 400시간 이상 점수: 0 / 1 / 3 / 5	5 이하	모두의 주차장 확인
		② 주·야간 배정자 기준 공유시간: 25시간 미만 / 25시간 이상 / 125시간 이상 / 200시간 이상 점수: 0 / 1 / 3 / 5		
	장기 대기자	대기기간: 1회 (6개월) / 2회 (1년) / 3회 (1년6개월) / 4회 (2년) / 5회이상 (2년초과) 점수: 1 / 2 / 3 / 4 / 5	5 이하	접수대기 신청기간 (공단 관리 프로그램)
비 거주자 (45)	① 관내 사업 기간(재직자는 재직기간) 점수	재직기간: 1년 미만 / 1년~2년 미만 / 2년~3년 미만 / 3년~4년 미만 / 4년~5년 미만 / 5년~10년 미만 / 10년~15년 미만 / 15년~20년 미만 / 20년 이상 점수: 3 / 5 / 7 / 10 / 13 / 15 / 20 / 25 / 30	30 이하	사업자 등록증/ 재직증명서
	※ 사업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재직자는 해당 업체 재직 시작일)을 기준하며 관내 사업 개시일 이전 입사자는 관내 사업 개시일부터 기간을 기산함.			
	② 거리 점수(사업장 소재지와 주차구획의 거리 기준)	거리: 10m 미만 / 10m~30m미만 / 30m~50m미만 / 50m 이상 점수: 15 / 10 / 7 / 3	15 이하	공단 관리 프로그램

※ 비고

1. 장애인 점수는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상 동일 세대에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도 부여함.(단, 가점을 동일 세대에 중복 부여하지 않음)
2. 거리 점수는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제 프로그램상 거리정보를 기준함.
3. 위 배점표의 해석상 특히 필요하면 공단이 별도의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음.
4. **공유점수는 차량번호 기준으로 집계하므로 차량번호 변경 시 변경전 적용된 점수는 정기 배정 접수기간에 합산 요청을 해야하며, 합산 요청 없을 경우 변경된 차량의 공유시간만 산정하여 점수 부여함.**
5. **시설주차장은 공유점수 산정 제외함**

2. 배정 제외 대상

가. 관련 법령상 차고지(주차장) 확보 의무가 있는 자동차

나. 동일 주소지의 신청인이 자동차를 2개 구획(전용구획 포함)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또는 2대 이상의 차량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 1세대 당 1구획, 1차량만 인정하고 나머지 신청 구획 및 차량은 공단 직권으로 배정 제외.

다. 기존 사용중인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하여 타 용도로 사용 및 임의로 훼손한 자의 자동차

라.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세 및 교통행정과 소관 교통 관련 세외수입을 체납한 자의 자동차 (마포구 체납 한정)

마. 기타 관련 법령(조례 및 방침 포함) 등에서 정하는 경우

바. 전수조사 및 서류 확인 등으로 서류 재요청 시 기한 내 미제출자의 자동차(배정 후에 미제출시 배정 취소)

3. 거주자주차장 배정(지정) 및 이용 원칙

가. 배정은 1가구 차량 1대 배정을 원칙으로 함.

나. 거주자인 신청자가 **직계 존비속(부부 포함) 또는 형제자매**의 소유 자동차로 신청하면 거주자로 간주함.(단, 주민등록표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입증 시에 한함)

다. 주차장은 개별 구획 배정이 아닌 구간제(구간 공동 이용제)로 배정하며 이용 기간은 6개월 단위로 하고 주차요금은 선납해야 함.

※ 단, 분납 신청 시 3개월 단위 분납만 가능

라. 주차요금을 납부 기한까지 미납한 경우 별도 예고 없이 배정 취소하고 취소분은 후순위(대기자)에게 배정함.

마. 거주자가 **리스차량** 또는 **재직 중인 회사의 자동차(법인 또는 사업자 명의)**로 **신청**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거주자로 배정함.**

※ 사실관계 확인 증빙자료: 재직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내역서

바. 차량 크기 2m×5.5m 미만의 차량만 신청 가능(특수건설 장비 등 신청 불가)

※ 시설 주차장은 높이 2.1m~2.3m로 이용 신청 전 문의(주차장별 다름)

사. 공사 등으로 주차구획이 없어지거나 교통문제 등 기타 사유로 이용 불가 시 대체 주차장을 제공하는 것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배정 후순위자 중 저득점자순**으로 배정 취소 및 환불함.

아. 도로 공사 등 각종 공사 시 이용이 정지될 수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자. 중도 이용 해지·포기 시에는 미사용 기간의 주차요금을 모두 환불함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

※ 환불 후 동일 기간 재배정 불가(대기 신청 원칙)

차. 배정받은 주차장은 주차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배정자의 오토바이, 물건적치, 미배정 차량과 교대 주차 등 금지)

카. 차량 변경 시 배정점수를 재산정하여 재배정하며, 차량 변경 전 부여되었던 가점을 인정받으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재배정 탈락 시 변경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 (신청일로부터 말일까지 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는 다음 달 10일)까지 이용 가능]
단. 차량수리로 인한 차량 변경 시에는 배정점수를 재산정하지 않음. (수리 기간 증빙서류 제출)

타. 법률 혹은 조례 개정 시 할인율 적용 및 폐지에 대해 사용 시작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배정 마감일까지의 할인 요금을 적용함
(예 : 7월 9일이 할인율 폐지 시행일이면, 7월 8일까지 할인 적용/7월 9일부터 할인 미적용)

파. 거주자우선주차장은 거주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주차장으로 개인의 사유지가 아님을 인지하고, 신청 및 배정자는 공유사업인 "모두의 주차장"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함.

※ 공유자의 적립금은 월 최대 4만원(24. 7. 1.부터 시행)

4. 배정 취소 요건(우리 공단 직권 취소 또는 영구 제외)

가. 배정 후 주차요금 납부기한까지 주차요금을 미납한 경우

나. 신청서 허위(착오) 기재, 신청 관련 **서류의 허위 및 조작** 등 이 발견된 경우 ※ 이 경우 배정 전·후를 불문하고 배정이 취소됨.

다. 공사 등으로 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가 없어지는 경우

라. 주차구획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공유주차 제외)

마. 그 밖에 이용자가 배정(지정) 원칙, 사용조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의 주차장 사용 조건(유의 사항)

가. 주차장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으므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에 따라 차량 훼손 및 도난은 우리 공단이 책임지지 않으므로 주차장 수탁 관리자인 공단에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없음.

나. 정당한 배정 차량, 이용 기간, 지정 이용시간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다른 주차구간이나 지정 이용시간 이외에 주차하면 단속(견인) 대상이 됨.

다. 신청 내용과 결과는 신청인이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또는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이용자)의 책임임.

라. 배정 여부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함.

마. 마포구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이용 신청한 자나 배정 받은 자는 모두 이 '배정 기준 및 조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바. 주차장에 불필요한 장애물을 설치할 수 없고 항상 청결을 유지해야 함.

사. 그 밖에 이 '배정기준 및 조건'에 없거나 해석상 다툼이 발생하는 사항은 우리 공단의 해석을 우선함.

6. 주차요금 기준(월정)

구분	전 일 (24시간)	주 간 (09시~18시)	야 간 (19시~익일08시)	비 고
거주자	4만원	3만원	2만원	일반구간 적용
비거주자	5만원	3만5천원	2만5천원	일반구간 적용
시설주차장	5만원	3만6천원	2만4천원	비거주자 구분 없음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
(☎ 02-300-5042~5045, FAX: 02-376-4068)